

I.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1. 원천징수세액 납부

- 소득세법 제127조 및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반기납부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홈택스에 의한 전자제출 포함)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작성한다.

【 참고 】

■ 월별납부 원천징수의무자가 2008년 9월 귀속 근로소득(총인원: 15명, 총지급액: 10백만원)을 2008년 9월에 지급하였으나, 근로자 각인별로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총인원과 총지급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2008년 10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에 대한 지급연월이 같더라도 귀속연월이 다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별지로 작성·제출한다.

【 참고 】

■ 월별납부 원천징수의무자가 2008.7월 및 2008.8월 귀속 근로소득을 2008년 8월에 지급한 경우 아래와 같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별지로 작성·제출한다.

- 월별납부자

구 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기한
신고서 I	2008년 7월	2008년 8월	2008년 9월 10일
신고서 II	2008년 8월	2008년 8월	2008년 9월 10일

2. 제출방법

- 월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한다. 그 기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법정공휴일로서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제출한다.
-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반기 종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다음 해당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그 지급의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상여, 기타소득금액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금액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구분	신고·납부 기한		
	매월 지급분	연말정산분	소득처분의 경우
월별납부자	다음달 10일	다음 해 3월 10일	매월 지급분과 동일
반기별납부자	7월 10일 (1~6월 지급분) 다음 해 1월 10일 (7~12월 지급분)	다음 해 7월 10일 (환급신청시 ⇒ 다음 해 3월 10일)	소득금액 변동통지 받은 날 또는 법인세 신고기일의 다음 달 10일

【 참고 】

-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반기납부자도 매월납부자와 같이 소득처분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이미 연말정산이 종료된 귀속분의 경우 ⇒ 소득처분된 금액과 소득처분으로 증가된 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A04)란에 기재하여 제출한다.

사 례

갑(주)는 12월말법인으로 2009. 3월 법인세 신고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소득(상여)처분이 1억원(추가로 납부할 세액 3천만원)이 있음
 참고로 갑(주)는 2009년 3월분(정기분) 근로소득세 지급액은 20명에 8천만원이고 원천징수 세액은 100만원이며 2008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A04인원	지급액	세액
연말정산	2009년 2월	2009년 2월	2009년 3월10일	20명	10억원	△1천만원

- 09. 4월에 제출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귀속연월이 다르므로 별지 작성)

신고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A01인원	지급액	세액
매월	2009년 3월	2009년 3월	2009년 4월10일	20명	8천만원	1백만원
소득처분	2009년 2월	2009년 3월	2009년 4월10일	A04인원	지급액	세액
				1명	1억원	3천만원

-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신고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A04인원	지급액	세액
소득처분	2009년 1월	2009년 3월	2009년 4월10일	1명	1억원	3천만원

※ 반기별 납부자가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말정산 분과 합산하여 재정산하거나, 연말정산시 세액과 비교하여 증가액만 납부할 수 있음

참고

■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증가된 금액과 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대상이 아니며, 소득처분이 있는 때에 소득처분의 귀속연월의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으로 인한 증가액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납부한다.
 다만,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는 당초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역에 소득처분된 금액을 반영하여 작성한 수정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 기타사업연도 법인에 있어 연말정산이 종료되지 않은 귀속연도에 대하여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당해 소득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

3. 구성

가. 기본사항

신고구분(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일괄납부 여부 등 신고서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나.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원천징수대상소득(A01~A90)별로 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조정환급세액 및 납부세액(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 환급세액조정

전월미환급세액에서 기환급신청세액을 차감한 금액과 당월발생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인 조정대상환급세액 및 당월납부할세액에서 조정환급할 세액 및 이월환급세액을 기재한다.

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거주자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저축 등의 해지추징세액, 비거주자 원천징수대상 소득 및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4. 작성요령

가. 기본사항

①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년 월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명 (상호)				대표자 (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1) ①신고구분

매월, 반기, 수정신고, 연말, 소득처분 등 신고서 제출사유별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시》

구분		표시요령 (해당항목에 ○표시)					
정기 신고	월별 납부	평월	매 월				
		연말정산	매 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반기별 납부	상반기	매 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하반기	매 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수정 신고	월별 납부	평월	매 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연말정산	매 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반기별 납부	상반기	매 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하반기	매 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2) 「②귀속연월」 및 「③지급연월」

-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귀속 및 지급연월을 기재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경비로 계상한 인건비 금액의 귀속과 연계되는 항목이므로 작성시 정확히 기재
- 연말정산의 경우 「귀속연월, 지급연월」란에 근로소득은 2009년2월, 사업소득·연금소득은 2009년1월로 작성
- 다만,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귀속연월」란에는 당해 「반기개시연월」을, 「지급연월」란에는 「반기종료연월」을 기재합니다.

- ① 월별납부자가 2008.9월분 급여를 11월에 지급한 경우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 기재
⇒ 귀속연월 : 2008년9월, 지급연월 : 2008년11월
- ② 반기납부자가 2008.하반기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 기재
⇒ 귀속연월 : 2008년7월, 지급연월 : 2008년12월

- 급여 등을 미지급하여 지급의제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급연월은 지급의제규정에 의해 지급월로 보는 연월을 기재
예 월별납부자가 2008.8월분 급여를 12월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 기재
⇒ 귀속연월 : 2008년8월, 지급연월 : 2008년12월

(3)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 대표자, 일괄납부여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
-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반드시 세무서장이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기재
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주의사항

중증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여하는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시 오류가 발생하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주의

나.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작성순서

1. 원천징수내역(④~⑧) → 소득별 납부할 세액의 합계액 → 총합계(A99)
환급할 세액의 합계액 → ⑮일반환급
2. ⑮조정대상 환급세액 도출 : ⑭차감잔액 + ⑮일반환급 + ⑯신탁재산(금융기관) + ⑰기타
3. ⑮조정대상 환급세액을 ⑨당월조정 환급세액에 코드순 배분 (A10→A20→A30...)
1) 납부할 세액의 합계액 > ⑮조정대상 환급세액 : 납부할세액 잔액 → 납부세액(⑩, ⑪)
2) 납부할 세액의 합계액 < ⑮조정대상 환급세액 : 납부할세액 = 0
4. ⑨당월조정 환급세액의 총합계(A99) → ⑲당월조정 환급세액계
5. ⑳차월이월환급세액 도출 : ⑮조정대상 환급세액 - ⑲당월조정 환급세액계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 부 세 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퇴직소득	A20									
사업 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A40									
연 금 수 득	매월징수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A69									
양도소득	A70									
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 합 계	A99									

(1) 원천징수내역(④~⑧)

- 소득지급(④ 인원, ⑤ 총지급액)

과세미달·비과세금액을 포함하여 소득자의 인원과 총지급액을 기재

- 연말정산 총지급액은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되는 항목(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제1항)은 포함하지 아니함
- 소득지급란의 기재사항은 각 소득종류별 지급명세서의 인원 및 지급금액과 대사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여부를 검증하는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게 기재

- 징수세액(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특별세, ⑧ 가산세)

당월 중 지급한 소득에 대해 소득종류별 구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입

A02(중도퇴사), A04(연말정산), A26(사업소득 연말정산), A46(연금소득 연말정산)의 경우 당월 중 당해 귀속연도에 지급한 누계금액에 대하여 소득자별로 연말정산한 결과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을 기재하며, 환급할 세액의 경우 해당란에 환급할 세액 앞에 “△”을 표시하여 기재

(2) 당월조정환급세액

- 징수세액(⑥~⑧)란에 각 소득종류별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

- [⑨당월조정환급세액]은 당월 징수한 세액에서 차감할 세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II. 환급세액조정의 [⑬조정대상 환급세액]의 범위 내에서 기재

- II. 환급세액조정의 [⑬조정대상 환급세액] = II. 환급세액 조정의 [⑭차감잔액] + [당월발생환급세액(⑮,⑯,⑰)]

-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⑬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많은 경우 [⑬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 [A10,A20,...]의 순서대로 조정환급하고(조정환급한 금액의 합계는 ⑩당월조정환급세액계에 기재) 조정환급 후 납부할 세액의 잔액은 조정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목의 납부세액(⑩,⑪)란에 기재

-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⑱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코드 [A10,A20,⋯]의 순서대로 조정환급하고 조정환급한 금액의 합계는 [⑲당월조정환급세액계]에 기재
[⑱조정대상환급세액]의 금액에서 [⑲당월조정환급세액계]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⑳차월이월환급세액]란에 기재
- 세목(소득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간 조정환급은 그 내역을 기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임의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한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연금소득의 경우 ⑨당월조정환급세액 및 납부세액(⑩, ⑪)은 소득별 가감계[A10,A30,A47]에만 기재합니다. 징수세액(⑥~⑧)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 소득별로 합산하여 납부세액(⑩, ⑪)란에 기입하고 징수세액이(⑥~⑧)란에 환급할 세액이 포함된 경우 소득별로 가감하여 기재
 - * “⑩소득세 등”란에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코드
[근로소득-중도퇴사(A02)], [근로소득-연말정산(A04)], [사업소득-연말정산(A26)], [연금소득-연말정산(A46)], [수정신고(A90)]
 - * “⑧가산세”란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기입하는 것으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재

(3) 납부세액

- 징수세액에서 당월조정환급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기재하며 납부서상 납부세액과 일치

【 작성사례 】

I. 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20	45,000,000	950,000				
	중도퇴사	A02	5	154,000,000	△300,000	75,000	30,000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25	199,000,000	①650,000	③75,000	②30,000	④700,000	0 55,000

총합계	A99	25	199,000,000	650,000	75,000	30,000	700,000	0	55,000
-----	-----	----	-------------	---------	--------	--------	---------	---	--------

II.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환급세액				⑬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⑰)	⑰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⑱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 기환급신청한 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⑯ 신택재산 (금융기관)	⑰ 기타				
700,000		700,000				700,000	700,000	0	

* 당월조정환급세액 [④700,000] 은 [①650,000] → [②30,000] → [③20,000] 順으로 차감
 * [총합계(A99)]란의 [⑨당월조정환급세액]의 금액과 II.환급세액조정의 [⑰당월조정환급 세액계]의 금액은 반드시 일치

【 참고 】

■ (주)성산은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인해 소득세 환급세액이 7,890,000원이 발생 하였으며, 매월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6,494,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50,000원)와 조정환급하고자 하는 경우

▶ 바르게 작성한 사례 ▶

I. 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50	135,000,000	6,494,000				
	중도퇴사	A02	6	162,000,000	△7,890,000	350,000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56	297,000,000	△1,396,000	350,000	350,000	0	0

II.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환급세액			⑬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 +⑩+⑪)	⑰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⑱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⑰)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기환급신청한 세액	⑭차감 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⑯신탁재산 (금융기관)	⑰ 기타			
380,000	0	380,000	1,396,000	0		1,776,000	350,000	1,426,000

반기별 신고·납부자의 신고서 작성요령

- 인원 ⇨ 간이세액(A01) : 반기(6월)의 마지막 월의 인원 기재
 - ⇨ 중도퇴사(A02) : 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 기재
 - ⇨ 일용근로(A03) :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인원 기재
 - ⇨ 사업(A25)·기타소득(A40)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원 (순인원)
 - ⇨ 퇴직(A20)·이자(A50)·배당(A60)·법인원천(A80)
 - : 지급명세서제출대상인원 (대부분 6개월 월별 합계인원)

- 지급액 ⇨ 6개월 합계액 기재
 - 2008년 하반기(7월~12월) 반기별 납부의 경우
 - ⇨ 귀속월은 2008년 7월, 지급월은 2008년 12월, 제출일자는 2009년 1월임
 - ※ 2008년 7월부터 12월(귀속이 아닌 원천징수월임)까지의 원천징수분은 2009년 1월 10일까지 납부

〈작성사례〉

- ① 7월 근로자 8명에게 1,600만원 지급
 - 〈6월에는 근로자 7명이었으나 7월 1명 입사〉
- ② 8월 8명, 9월 8명, 10월 8명에게 3개월간 4,800만원 지급
- ③ 11월 근로자 2명 퇴사, 1명 입사 → 7명에게 1,400만원 지급
- ④ 12월 근로자 2명 입사 → 근로자 9명에게 1,800만원 지급

- ⇨ “A01란 간이세액”의 인원은 9명(12월 인원), 지급액은 9,600만원
- “A02란 중도퇴사”의 인원은 2명(11월 퇴사), 지급액은 4,000만원
- ⇨ 이 경우 A01과 A02의 인원 합계가 6개월간 근로한 인원의 합계가 됨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는 11매임)

II. 납부서 작성요령

영 수 증 서(납세자용)

국세징수법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2003.1.24.개정)

(제3면)

(전 자) 납 부 번 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 목				
0126					세무서			
상호(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일반회계	재정경제부소관	조세	
사업장(주소)					전화	회계연도		

귀속연도/기분	년 귀속 기 분											
세 목 명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세												
농어촌특별세												
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은 행 지점
우체국

수납인

(1) 기재요령

- ① 분류기호 : 0126 [국세, 국세청]
- ② 서 코 드 : 관할세무서 3자리
- ③ 납부연월 : [사례 2009.01 ⇒ 0901]
- ④ 납부구분 :
 - 1 [확정분 자납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소득·법인)세 정기신고분]
 - 2 [수시분 자납 : 수정신고, 추가신고, 정정신고등 수시로 자납하는 것]
 - 3 [예정신고 및 중간예납 : (부가가치·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분]
 - 4 [원천분 자납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세액을 납부, (소득·법인)세 원천분]
- ⑤ 세 목

- 종합소득세(10) 이자소득세(11) 배당소득세(12) 사업소득세(13) 갑종근로소득세(14) 기타소득세(16) 연금소득세(17) 퇴직소득세(21) 양도소득세(22) 법인세(31) 상속세(32) 증여세(33) 부가가치세(41) 특별소비세(42) 주세(43) 인지세(46) 교통세(53) 농어촌특별세(55), 종합부동산세(57)

- ⑥ 수입징수관서 및 계좌번호 : 관할세무서명과 세무서계좌번호
- ⑦ 상호(성명)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등)는 성명, 그 이외는 상호
- ⑧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그 이외는 사업자등록번호
- ⑨ 사업장(주소)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그 이외는 사업장 주소

(2) 세목번호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갑종근로소득세	14	산림소득세	23	전화세	44
기타소득세	16	상속세	32	종합소득세	10
배당소득세	12	양도소득세	22	주세	43
벌금	77	연금소득세	17	증권거래세	45
법인세	31	을종근로소득세	15	증여세	33
부가가치세	41	이자소득세	11	토지초과이득세	36
부당이득세	35	인지세	46	퇴직소득세	21
사업소득세	13	자산재평가세	34	특별소비세	42

- * (음영처리 표시) 세목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로만 기재
- * (밑줄표시) 세목은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만 기재
- * 나머지는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기재
- ▶ 단, 사업자 자격으로 납부하는 세금 중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

(3)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드	세무서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드	세무서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드	세무서 계좌번호
강 남	211	180616	마 포	105	011840	대구청	500	040756
강 동	212	180629	목 포	411	050144	영 덕	507	170189
강 릉	226	150154	반 포	114	180645	영 동	302	090311
강 서	109	012027	보 령	313	930154	영등포	107	011934
거 창	611	950419	부산진	605	030520	영 월	225	150183
경 산	515	042330	부 천	130	110246	영 주	512	910378
경 주	505	170176	북광주	409	060671	예 산	311	930167
고 양	128	012014	북대구	504	040772	용 산	106	011947
공 주	307	080460	북부산	606	030533	용 인	142	002846
광 주	408	060639	북인천	122	110233	울 산	610	160021
구 로	113	011756	북전주	418	002862	원 주	224	100269
구 미	513	905244	삼 성	120	181149	의정부	127	900142
군 산	401	070399	삼 척	222	150167	이 천	126	130378
금 정	621	031794	상 주	511	905260	익 산	403	070425
금 천	119	014371	서광주	410	060655	인 천	121	110259
김 천	510	905257	서대구	503	040798	전 주	402	070438
김 해	615	000178	서대문	110	011879	정 읍	404	070441
나 주	412	060642	서대전	314	081197	제 주	616	120171
남대구	514	040730	서부산	603	030546	제 천	304	090324
남대문	104	011785	서 산	316	000602	중 로	101	011976
남양주	132	012302	서인천	137	111025	중 부	201	011989
남 원	407	070412	서 초	214	180658	중부산	602	030562
남인천	131	110424	성 남	129	130349	진 주	613	950435
노 원	217	001562	성 동	206	011905	창 원	609	140669
논 산	308	080473	성 북	209	011918	천 안	312	935188
대 전	305	080486	속 초	227	150170	청 주	301	090337
도 봉	210	011811	송 파	215	180661	춘 천	221	100272
동대구	502	040769	수 영	617	030478	충 주	303	090340
동대문	204	011824	수 원	124	130352	통 영	612	140708
동 래	607	030481	순 천	416	920300	파 주	141	001575
동수원	135	131157	시 흥	140	001588	평 택	125	130381
동안양	138	001591	안 동	508	910365	포 향	506	170192
동울산	620	001601	안 산	134	131076	해 남	415	050157
동 작	108	000181	안 양	123	130365	홍 성	310	930170
동청주	317	002859	양 천	117	012878	홍 천	223	100285
마 산	608	140672	여 수	417	920313			
국세청	000	011769	역 삼	220	181822	연구소	073	011772
서울청	100	011895	교육원	071	130776	대전청	300	080499
광주청	400	060707	중부청	200	000165	부산청	600	030517

Ⅲ.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및 전자 신고·납부

1. 홈택스(Home Tax)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 이용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사용자 번호(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한다.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가입 가능

● 지급명세서 작성방식

일반사용자가 ‘홈택스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입력한 후 오류검증하여 제출(전송)하는 방식

① 프로그램 설치

홈택스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선택 → 왼쪽 메뉴에서 [지급명세서]선택
→ [해당지급명세서]클릭 ⇒ 프로그램 자동설치

②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전송

지급명세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후 오류검증하여 전송

③ 접수증 확인

지급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자동 팝업으로 보여줌

④ 지급명세서 제출결과 확인

지급명세서를 전송해야만 홈택스에 제출되며 홈택스에 접속하여 [과세자료 제출] → [지급명세서] → [제출현황조회]에서 접수건수, 금액 등을 최종 확인하고 접수증은 인쇄하여 보관

● 지급명세서 변환·전송방식

회계프로그램 등 사용자가 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프로그램에서 지급명세서 자료(파일)를 작성한 후 '홈택스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오류검증하여 제출(전송)하는 방식

※ 자체 전산시스템에 의해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자료실에 등록된 「2008년 귀속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자료를 생성하여야 함.

① 지급명세서 변환프로그램 설치

홈택스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선택 → 왼쪽 메뉴에서 [프로그램설치]선택 → 과세자료제출변환프로그램의 [지급명세서]설치

② 지급명세서 변환

회계프로그램 또는 자체개발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지급명세서를 「지급명세서 제출용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환(바탕화면의 '지급명세서 변환' 아이콘 클릭)

③ 지급명세서 전송

홈택스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선택 → 왼쪽메뉴에서 [지급명세서]선택 → [지급명세서전송하기] 클릭 → 해당지급명세서 선택후 [전송]클릭

④ 접수증 확인

지급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자동 팝업으로 보여줌

⑤ 지급명세서 제출결과 확인

지급명세서를 전송해야만 홈택스에 제출되며 홈택스에 접속하여 [과세자료 제출] → [지급명세서] → [제출현황조회]에서 접수건수, 금액 등을 최종 확인하고 접수증은 인쇄하여 보관

Ⅳ.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

1. 소득공제대상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2. 관계코드 : 근로자와의 관계를 관계코드를 참고하여 숫자로 기재
3. 내·외국인 : 내국인, 외국인 여부 기재
4. 인적공제항목 :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인적공제 항목에 ○ 한다.

〈 인적공적 대상검토표 〉

관계		기본 공제	부녀자 공제	장애인 공제	경로우대 공제	자녀양육비 공제	출산입양자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본인	0	-	· 기혼여성 ·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상이자 증명을 제출한 자	65세 이상	×	×	×	
소득 금액 100 만원 이하	소득자 직계 존속	1	남60세 이상			×	×	×	×
	배우자 직계 존속	2	여55세 이상			×	×	×	×
	배우자	3	-			×	×	×	×
	직계 비속	4	20세이하			×	6세이하	당해연도 출생·입양	20세이하 자녀 2인이상
	형제 자매	5	20세이하 남60세 이상 여55세 이상			×	×	×	×
	기타	6	기초생활 수급자			×	×	×	×

5. 각종소득공제항목(기재항목)

- 보험료 : 보장성보험(피보험자 기준)의 기재(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기재
- 의료비 : 환자명을 기준으로 기재
- 교육비 :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을 중심으로 기재를 기준으로 기재
다만, 장애인 재활교육비의 경우 소득제한 없음
- 신용카드 : 카드명의자를 중심으로 작성(형제자매 사용분 제외)
- 현금영수증 : 영수증명의자를 중심으로 작성(형제자매 사용분 제외)
- 기부금 : 기부자를 중심으로 작성(본인, 기본공제배우자, 기본공제 직계비속)
※ 국제청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소득공제증빙서류임

6. 지출액 및 공제금액기재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원천징수의무자 기재)
 - 국민연금보험료외의보험료 :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에 의해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원천징수의무자 기재)
 - 퇴직연금 : 퇴직연금 근로자 부담분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분(원천징수의무자 기재)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본인 부담 분(원천징수의무자 기재)
 -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분(원천징수의무자 기재)
- 의료비
 - 본인·경로자·장애인 의료비 : 본인 경로자와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합계
 -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 본인 경로자 장애인 외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합계
- 교육비
 - 소득자 본인 :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 취학전아동 : 취학전 아동을 위해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에 지출한 금액
 - 초·중·고등학교 : 학교 수업료, 교과서대, 급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 대학생 : 대학교 수업료, 입학금으로 지출한 금액
 - 장애인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지출한 금액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기부금
 -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항목별로 기재
- 혼인비 이사비 장례비 : 총급여액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사유 발생 시 1회당 100만원 공제
- 연금저축공제
 -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 연간 불입액
 -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 연간 불입액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금액
-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불입액 기재
- 투자조합출자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 신용카드등 공제
 - 신용·직불·기명식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 사용액 중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된 사용액을 차감 후 기재
-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장기주식형 소득공제
 - 1년차 불입액의 20%
 - 2년차 불입액의 10%
 - 3년차 불입액의 5%
- 외국납부세액 :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95.11.1~97.12.31 중 미분양주택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기부정치자금 중 10만원이내 금액(10만원 초과금은 전액공제 기부금에 기재)

V.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요령

1. 대상자

- 서식 작성 대상자 ⇒ 의료비 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
- 전산 파일 제출 대상 ⇒ '08귀속 의료비 공제액 200만원 이상 근로자
 - ※ 연말정산을 전산으로 수행하여 근로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의료비지급내역을 전산입력하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작성요령

- 가. 2007.12.01~2008.12.31 지출한 내역을 기재한다
- 나.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경우만 기재
- 다.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㉞본인등해당여부란에 ○ 표 한다
 - 그 외의 의료비공제 대상자는 X표 한다
- 라. 의료 증빙코드를 기재합니다
 - 1 -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된 의료비 자료
 - 2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 3 -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 4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 5 - 기타 의료비 영수증
- 마.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한 의료비 내역
 - 인별로 합계액을 기재, 의료증빙코드 "1"(사업자등록번호, 건수는 기재하지 아니함)
- 바. 의료비 영수증 제출분
 - 인별로 의료기관을 구분하여 의료기관 사업자등록번호, 건수, 금액을 기재 한다.

<사 례>

- 의료비 지출내역

부양가족	자료구분	지 출 내 역				의료증빙 코드
근로자 송이국 (760606- 1234567)	간소화 서비스 조회자료	가가병원 :	111-11-11111	2008.03.10	300,000원	1
		가가병원 :	111-11-11111	2008.05.11	500,000원	
		나나약국 :	222-22-22222	2008.04.24	100,000원	
		나나약국 :	222-22-22222	2008.05.21	100,000원	
		다다의원 :	333-33-33333	2008.08.31	500,000원	
		라라약국 :	444-44-44444	2008.07.01	100,000원	
	약제비계산서	라라약국 :	444-44-44444	2008.09.10	120,000원	3
배우자 김이순 (761213- 2345678)	의료비 영수증	가가병원 :	111-11-11111	2008.03.15	600,000원	3
		가가병원 :	111-11-11111	2008.03.22	300,000원	
	기타	바바안경 :	555-55-55555	2008.03.23	100,000원	5

㉑ :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된 의료비내역의 인별 건수, 금액을 합하여 기재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며 의료증빙코드 1로 기재

㉒, ㉓, ㉔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 의료비 지급명세서 입력요령

의료비 공제 대상자													지급처				지급내역												
⑤주민등록번호													⑥ 본인 등 해당 여부		⑦사업자 등록번호				⑧ 의료 증빙 코드	⑨ 건수	⑩ 금액								
7	6	0	6	0	6	-	1	2	3	4	5	6	7	○			-	-					1		1,600,000				
7	6	0	6	0	6	-	1	2	3	4	5	6	7	○	4	4	4	-	4	4	-	4	4	4	4	3	1	120,000	
7	6	1	2	1	3	-	2	3	4	5	6	7	8	×	1	1	1	-	1	1	-	1	1	1	1	3	2	900,000	
7	6	1	2	1	3	-	2	3	4	5	6	7	8	×	5	5	5	-	5	5	-	5	5	5	5	5	5	1	100,000

☞ 송이국 : 간소화 출력자료는 의료증빙코드 "1" 로 기재하며 금액의 합계액만 기재
김이순 : 전부 그 외 영수증 자료로 의료기관별 각각의 건수 및 금액 합계액을 구분하여 기재

Ⅵ. 기부금명세서 작성요령

1. 대상자

- 서식 작성 대상자 ⇒ 기부금 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
- 전산 파일 제출 대상 ⇒ (08귀속) 100만원 이상 근로자
 - ※ 공제대상 기부금 : 본인, 기본공제배우자, 기본공제자녀가 지출한 기부금이 공제 대상이나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기부한 금액이 공제대상이다.
 - ※ 근로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내역을 입력하여 연말정산을 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 없다.

2. 작성요령

- ③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
 - ⑨ 기부내용 : 현금, 자원봉사, 기부물품명 등 기부내용을 간단히 기재
 - ⑩ 기부연월 : 기부 연월을 기재하며 동일 기부처의 경우 월별 합계액으로 기재
 - ⑪ 상호, ⑫사업자 등록증, ⑬금액 : 기부금단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기부금액을 기재 정치자금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대상기간의 합계액을 한 줄로 최상단에 기재하며 정치자금기부금의 총합계에서 10만원(세액공제분)을 뺀 금액으로 기재
 - ⑭ 기부자 : 다음의 해당되는 코드를 기재
 - 1. 거주자본인 2. 배우자 3. 직계비속
 - ⑮ 기부금 종류별 소계
 -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법정기부금, 코드 1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특별재난지역 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기부금품 등을 기재
 -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정치자금, 코드 20)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금액으로 10만원을 뺀 금액을 기부처 구분없이 연간 합계액으로 기재
- ex) '08.10.01 500,000원 '08.11.20 400,000원 ⇒ 800,000원

- 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진흥기금출연, 코드 21)
 -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지출한 금액
- ㉕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같은항제1호 및 제15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조특법73조, 코드30)
 - 사내근로복지기금, 독립기념관, 특정연구기관 등, 정부출연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및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에 지출한 금액
- ㉖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익법인기부신탁 기부금 공제금액(조특법73㉖, 코드31)
- ㉗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지정기부금, 코드 40)
 -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기재
- ㉘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코드 41)
- ㉙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우리사주기부금, 코드 42)
- ㉚ 기타 기부금(기타, 코드 50)
 - 필요경제 및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부금
- ㉛ 공익법인기부신탁 기부금 이월액 명세
 - 당해 과세 기간 및 당해 과세기간 개시 3년 이내의 공익법인기부신탁 기부금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기재
 - 당해 과세기간의 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 이월액은 「이월액」란에만 기재
 - 당해 과세기간 외 이월액은 「이월액잔액」, 「해당과세기간 공제금액」, 「이월액란」을 기재
 - 과세기간 ⇒ 기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재